노인일자리 지원에 관한 법률안 (남인순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3574

발의연월일: 2020. 9. 7.

발 의 자:남인순·고영인·강선우

맹성규 · 박성준 · 송재호

양정숙・윤미향・윤재갑

이상직 • 아주전비 • 이용빈

전혜숙 · 정춘숙 · 최종유

(15인)

제안이유

인구의 고령화로 노인인구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나, 노후준비 부족 등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들이 많아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. 또한, 생활수준의 향상 및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기대수명은 증가하고 있으나, 조기퇴직 등으로 인하여 노동을 통하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는 감소함에 따라 노인들의 사회활동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고 있음.

이에 급증하는 노인인구에 대하여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 욕구에 대응하여 자립적이고 안정된 노후를 영 위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경험과 전문성이 사장되지 않고, 사회·경제 전반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음. 본 법률안은 노인에게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·보급하고 사회활동참여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인의 자존감,소속감,소득증대,건강개선 등 삶의 질 향상을 통한 권익증진과 더불어 지역사회 기여 및 국가의 성장 동력 확보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.

주요내용

- 가. 이 법은 노인이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일자리 등 사회참여를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(안 제1조).
- 나.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노인일자리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,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·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·추진하도록 함(안 제4조 및 제5조).
- 다. 노인일자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·조정·의결하기 위하여 보 건복지부에 노인일자리위원회를 두도록 함(안 제6조).
- 라.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일자리 지원을 위한 상담 및 연계지원, 직업교육훈련지원, 창업지원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).
- 마.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그 밖의 공공단체는 노인일자리 지원을 위해 생업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3조).

- 바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일자리전담기관, 노인일자리협력기관 등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을 설치·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·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, 노인일자리지원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4조).
- 사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사업을 위해 필 요한 경우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함 (안 제15조).
- 아.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일자리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을 설립하도록 함(안 제16조).
- 자. 공공기관의 장은 노인을 우선하여 고용하도록 함(안 제17조)
- 차.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생산품의 판매·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고, 노인생산품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도록함(안 제18조 및 제19조).

노인일자리 지원에 관한 법률안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법은 노인이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일자리 등 사회참여를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"노인일자리"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고 노인의 건강증진, 사회참여 및 소득증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수 있는 일자리를 말한다.
- 2. "노인일자리지원기관"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체단체에 등록된 비 영리 단체 또는 기관으로서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지원기관을 말한다.
- 3. "노인생산품"이란 노인일자리지원기관에서 생산된 제품 및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.
- 제3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일자리 지원 대책의 수립·시행, 직업능력개발훈련 등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.

- 제4조(기본계획의 수립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노인일자리 지원 기본계획(이하 "기본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야 한다.
 -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·조정을 거쳐야 한다. 기본계획의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 -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 - 1. 노인일자리 지원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
 - 2. 노인일자리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
 - 3. 노인일자리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· 보급에 관한 사항
 - 4. 노인일자리 관련 교육 · 훈련에 관한 사항
 - 5. 노인일자리 지원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및 운영 방안
 - 6. 그 밖에 노인일자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
 -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제5조(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)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특별시장·광역 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(이하 "시행계획"이라 한 다)을 각각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 - ② 시·도지사는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대

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보건복지부장관은 제출된 시행계획을 점검하여 시·도지사에 게 시행계획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.

- 제6조(노인일자리위원회) ① 노인일자리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조정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노인일자리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 - 1. 노인일자리 지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
 - 2. 노인일자리 지원을 위한 주요 정책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
 - 3.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
 -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원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
 - 1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
 - 2. 노인일자리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
 -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7조(실태조사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· 시행을 위하여 노인일자리에 관한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령으로 정한다.

제8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 노인일자리 지원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2장 노인일자리 지원 서비스

- 제9조(사회활동 지원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공동체 구성을 통하여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하여 참여하는 사회활동 및 취약계층 대상 전문적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 지원 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.
 - ② 사회활동 및 일자리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,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- 제10조(상담 및 연계지원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의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상담을 실시하고, 구인정보 제공 및 노인일자리연계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 대상,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- 제11조(직업교육훈련지원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일자리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인에게 적합한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도록 지원할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의 지원 대상, 기준 및 절차 등에 관

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- 제12조(창업지원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.
 - 1. 노인 창업 희망자의 발굴
 - 2. 노인 창업을 위한 절차 등에 대한 상담ㆍ자문 및 교육
 - 3. 자금조달, 인력, 판로 및 사업장 입지 등 창업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
 - 4. 그 밖에 노인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
 -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 대상,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- 제13조(생업지원) ① 국가,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소관 공공시설에 식료품·사무용품·신문 등 일 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 65세 이상 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.
 - ② 국가,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소관 공공시설에 청소, 주차관리, 매표 등의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65세 이상 노인을 100분의 20 이상 채용한 사업체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.
 - ③ 제2항에 따른 위탁사업의 종류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3장 노인일자리 지원기관 및 기반조성

- 제14조(노인일자리지원기관) ①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사 업을 전문적·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지원기관(이하 "노인일자리 지원기관"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.
 - 1. 노인일자리전담기관: 지역사회 등에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개발·지원, 창업·육성 및 노인에 의한 재화의 생산·판매 등을 직 접 담당하는 기관
 - 2. 노인일자리협력기관: 노인에게 취업 상담 및 정보 제공을 통하여 노인일자리를 알선하는 기관 또는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외에 지방자 치단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노인의 일자리 등 사회참여를 위하 여 지원하는 기관
 -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을 설치·운영하 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·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 - ③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설치·운영 또는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 - ④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시설 및 인력에 관한 기준 등은 보건복지 부령으로 정한다.
 -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- 제15조(국·공유재산의 무상대부)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일자

리지원기관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「국유재산법」 또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.

- 제16조(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설립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일자리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노인인력개발원(이하 "개발원"이라 한다)을 설립한다.
 - ② 개발원은 법인으로 한다.
 - ③ 개발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.
 - ④ 개발원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.
 - ⑤ 개발원이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 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
 - ⑥ 개발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 - 1.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개발 및 보급
 - 2.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관련 종사자 및 참여자의 교육훈련
 - 3.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에 관한 조사 및 연구
 - 4.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에 관한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
 - 5.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에 관한 대국민 인식개선 홍보
 - 6. 그 밖에 노인일자리 개발 및 지원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한 사항

-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원의 설립·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- ⑧ 개발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「민법」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- 제17조(공공기관의 노인 우선고용 의무)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노인을 우선하여 고용하여야 한다.
- 제18조(노인생산품 판매촉진 등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생산품 판매·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시회, 박람회, 홍보행사 등의 행사를 개최하거나 지원을 할 수 있다.
- 제19조(노인생산품 우선구매) 국가,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노인생산품의 우선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.

제4장 보칙

- 제20조(유사명칭의 사용금지) 이 법에 따른 개발원이 아닌 자는 한국 노인인력개발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.
- 제21조(자료의 요청)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일자리 지원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효율적 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관계 중앙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, 그 밖의 관련 기관 및

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 및 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
- 제22조(보고와 검사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개발원의 업무를 지도·감독하며, 업무·회계 등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.
 - ② 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노인일 자리지원기관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,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,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 부·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.
 - ③ 제2항에 따라 출입·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.
 - ④ 제2항에 따른 출입·검사의 절차·방법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「행정조사기본법」에서 정하는 바에따른다.
- 제23조(권한의 위임 및 위탁)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·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.
 - ② 이 법에 따른 시·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
 -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

-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원 또는 노인일자리지원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
- 제24조(과태료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 - 1. 제20조를 위반하여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
 - 2. 제22조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 또는 보고한 자
 - 3. 제22조제2항에 따른 출입·검사를 거부·방해하거나 기피한 자
 -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 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·징수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- 제2조(재단법인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 관한 경과조치) ① 이 법 시행당시 「민법」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노인인력개발원(이하 "구법인"이라 한다)은 총회 의결로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노인인력개발원(이하 "신법인"이라 한다)이 그 모든 재산과 권리·의무를 승계하도록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구법인은 신법인의

설립과 동시에 「민법」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, 구법인에 속하였던 모든 소관업무, 권리·의무 및 재산은 신법인이 승계한다.

- ③ 제2항에 따라 신법인에 승계될 재산의 가액은 신법인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.
- ④ 신법인 설립 당시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(公簿)에 표시된 구법인의 명의는 신법인의 명의로 본다.
- ⑤ 신법인 설립 당시 구법인의 임직원은 신법인의 임직원으로 보며, 임직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한다.
- ⑥ 신법인의 설립 이전에 구법인이 행한 행위 또는 구법인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신법인이 행한 행위 또는 신법인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.
- 제3조(노인일자리지원기관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「노인복지법」 제23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노인일자리지원기관 및 노인취업알선기관은 이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노인일자리지원기관으로 본다.
- 제4조(다른 법률의 개정) 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3조의2를 삭제한다.

제23조의3을 삭제한다.

제25조를 삭제한다.

제31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6. 「노인일자리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제23조의 2제1항제2호의 노인일자리지원기관"을 "노인의료복지시설"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중 "제23조의2제4항, 제33조제4항"을 "제33조제4항"으로 한다.

제45조제2항제1호를 삭제한다.